학칙(학교 규칙) 입안예고

연성중학교 공고 제2018-13호

연성중학교 학칙을 제정(또는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연성중학교장

1. 제명 : 연성중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8조 5항(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30.), 교육부훈령 제195호(2017.3.1.)에 의거하여 학칙을 새롭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칙 제13조(수업운영) 5항 개정

1) 관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5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1610(2018.2.8.)

2) 내용

-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기간 변경 연간 20일 이하
- ·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 현장체험학습 기간 초과 기간 시 무단결석 처리
- · 천재지변 및 교통사정으로 초과한 기간으로 기타결석(내부결재)으로 처리
- ·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장 및 상업적 내용, 정기고사(지필평가) 기간, <u>성적</u> 이의신청기간(고사 후 7일), 영어듣기평가 등은 체험학습을 불허 한다.
- · 학교행사(숙박형 체험학습 등)인 경우 <u>반드시 보호자 인솔인 경우에만</u> 허가하다.
- ·보고서 제출 기간 변경 종료 후 **5일 이내** 처리
- ·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 별 첨 : 연성중학교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연성중학교장(참조 교무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70-7097-2788, 팩스404-3035)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 홈페이지(http://www.yeonseong.ms.kr)에 게 시되어 있음